

## 14-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 ■ 공시지침

【공시기관】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원자료조사시기】 : 2026년 7~8월(대학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실태조사)

【공시시기】 : 2026년 10월

【공시방법】 : 간접입력(교육부)

【공시내용】 : 2026년 대학 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공시양식】 :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 2026. 4. 1.)

기준 연도	인권센터 조직 현황		인권센터 시설 현황			인권센터 인력 현황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현황										
	설치 여부 (O/X)	예산 (단위: 원)	상담·조사 독립 공간 유무 (O/X)	상담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 유무 (O/X)	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O/X)	인권센터장 유형	총 직원 수 (단위: 명)		성희롱·성폭력 대응 인력과 인권 침해 대응 인력 구분 여부(O/X)	설치 여부 (O/X)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전담 인력	겸직 인력			전체 위원 수	교직원		학생		전문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현황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시설 현황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인력 현황														
설치 여부 (O/X)	설치 유형 (①~⑤중 선택)	전담 인력 지정 여부 (O/X)	예산 (단위: 원)	상담·조사 독립 공간 유무 (O/X)	상담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 유무 (O/X)	상담실 내 비상벨 설치 유무 (O/X)	부서장		부서원								고용 형태별 (단위: 명)			
							성별 (단위: 명)	성별 (단위: 명)	업무별 (단위: 명)				고용 형태별 (단위: 명)							
									남	여	남	여	성사안 예방 + 대응 업무	성사안 예방 업무	성사안 대응 업무	기타 행정 업무	정규직 (무기 계약직 포함)	기간제 계약직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					
위원회 설치·운영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규정 제정 여부 (O/X)					
설치 여부 (O/X)	성사안 전담여부 (O/X)	대학 내부		대학 외부						
		남	여	남	여					

### ■ 작성지침

【인권센터 조직 현황】 :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조직 현황 - 설치 여부】 : 인권 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 유무를 O/X 중 택1

【조직 현황 - 예산】 : 2026회계연도 기준 인권센터에 배정된 예산으로 인권센터 업무를 위해 별도 채용된 사람의 인건비 포함

【인권센터 시설 현황】 : 인권센터에 갖추고 있는 안전장치 현황

- 【시설 현황 - 상담·조사 독립공간 유무】 : 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존재하는지 O/X 중 기재
- 【시설 현황 - 상담실 내 CCTV 설치 유무】 : 상담 조사 공간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O/X 중 기재
- 【시설 현황 - 상담실 내 비상벨 등 보호 장치 설치 유무】 : 상담 조사 공간 내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O/X 중 기재
- 【인권센터 인력 현황】 : 인권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관한 현황
- 【인력 현황 - 인권센터장 유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참고, 1호의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교원으로서의 직위)으로 작성, 2호의 외부 전문가인 경우는 외부전문가(전문분야) 기재 (예) 교원(부교수), 외부전문가(상담), 그 외 유형은 기타로 입력
- 【인력 현황 - 총직원 수】 : 인권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체 직원 수(센터장, 행정, 상담, 조사 인력 포함. 전담 인력, 겸직 인력 모두 포함)
- 【인력 현황 - 전담 인력 수】 : 인권센터 업무(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만을 전담하고 그 외 기관·부서의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지 않은 직원 수
- 【인력 현황 - 겸직 인력 수】 : 총직원에서 전담 인력을 제외한 직원 수로, 인권센터 업무(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포함) 외에 다른 기관·부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직원 수
- 【인력 현황 - 성희롱·성폭력 대응 인력과 인권침해 대응 인력 구분 여부】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를 'O/X'로 표시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현황
- 【운영위원회 - 설치 여부】 :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O/X 중 택 1
- 【운영위원회 - 전체 위원 수】 :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구성된 총 위원 수 기재
- 【운영위원회 - 위원 구성 현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5항의 분류에 따라, 교직원·학생·전문가 위원의 임명 현황을 성별을 나누어 기재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현황】 : 인권센터를 포함, 학내 구성원(학생·교직원)과 관련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고충 상담, 사안 처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 (기준) 학교법인 정관, 학교규칙 및 직제 규정 등에 명시된 조직 및 기구
- 【조직 현황-설치유형】 : ① 인권센터 내에 설치, ② 일반 학생상담센터 내 설치, ③ 학내 행정기관 내에 설치, ④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 ⑤ 기타 중에서 하나만 선택
- 【조직 현황-전담인력 별도 지정 여부】 : 전담조직 내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하는 자를 그 밖의 업무(인권, 학생상담 등) 하는 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 여부를 'O/X'로 표시
- 【조직 현황-예산】 : 회계연도 2026년 기준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인권센터 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후 입력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시설 현황】 : 전담조직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현황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인력 현황】 :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현황(부서장 포함)
- 【인력 현황-업무별】 : 전담업무별로 구분(성사안 예방+대응 업무, 성사안 예방 업무, 성사안 대응 업무, 기타행정업무로 분류)  
 ※ '성사안 예방 업무'는 교육, 각종 예방행사, 성인식 조사 등이 해당되고, '성사안 대응 업무'는 성고충상담, 사안처리 등이 해당되며, '기타행정업무'는 성사안 예방 및 대응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업무가 해당됨. 성사안 예방 업무와 대응 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성사안 예방+대응 업무'에 표시하고, 예방·대응·행정업무가 중복될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큰 업무에 표시

【인력 현황-고용 형태별】 :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분류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 등 조치를 위해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조사·심의 위원회-성사안 전담여부】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심의 등 처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로서 타 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O/X’로 표시

【조사·심의 위원회-위원 구성 현황】 :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인 대학 내부로, 해당 학교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대학 외부로 구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관련 규정 현황】 : 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처리에 근거가 되는 규정 제정 여부

## ■ 참고사항

- 인권센터 운영 현황은 대교협 학사지원누리집을 통해 제출받을 예정이며, 7월 중 교육부에서 제출 방법 안내(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 현황은 교육부(〈대학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교육부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